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11
------	------

제출일자 : 2022. 9. 6.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08호 2022. 2. 3.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삭제함(안 제1조)
- 나.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의무화함(안 제13조 본문)
- 다. 운영비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2022. 8. ~ 2022. 8. (20일 이상)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시행(가족정책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체육진흥법</u>」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3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u>국민체육진흥법</u>」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u>지원할 수 있다.</u> &lt;조문신설 2021.9.29.&gt;</p> <p>1. 금천구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2. (생 략)</p>	<p>제1조(목적) ----- 「<u>국민체육진흥법</u>」-----</p> <p>-----</p> <p>-----.</p> <p>제13조(운영비 지원) -----</p> <p>-----</p> <p>-----</p> <p>----- <u>지원하여야 한다.</u> -----</p> <p>1. <u>인건비</u></p> <p>2. <u>사무관리비</u></p> <p>3. <u>임차료</u></p> <p>4. (현행 제2호와 같음)</p>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박신우
연 락 처	2627 - 1464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9.29.>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금천구청장과 금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1.9.29.>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이 되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18.11.9>

④ 위원은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사업체 등이 협의회 안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안전의 당사자인 법인·단체·사업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우수선수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9.29.>

1. 금천구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964호, 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996,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1197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전문개정 2016. 2. 3.]